

수원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01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0. 7. 8.

판결 선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임야 3,900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9. 11. 9. 접수 제251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9. 11. 5.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같은 법원 2000. 5. 31. 접수 제123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0. 5. 21.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이종민

별지